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친환경운전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캠페인 위주의 단편적·산발적 추진에 그쳐 국민적인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실정임

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현재 1,900여만 대에서 2020년에는 2,200만 대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모두가 친환경운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다.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운전 확산이 중요함

라. 따라서 친환경운전 확산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친환경운전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9호 신설)

나. 시장은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7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친환경운전”이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말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친환경운전 확산 운동 전개) 시장은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u>현행과 같음</u>) 9. “<u>친환경운전</u>”이란 운전자가 <u>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운전습관을 말한다.</u> 제26조의2(<u>친환경운전 확산 운동</u> 전개) 시장은 친환경운전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 기후변화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원(제30조)
- 재정지원 등(제3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 대응시책으로 추진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4조 규정에서 정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친환경운전 관련 시설 설치 및 차량기기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친환경운전 관련한 시설물, 교육·홍보비, 인건비 집행근거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2014년 : 101,000천원
 - 에코드라이브 안내표지판 설치비 = 75,000천원(3개×2,500만원)
 - 친환경운전 교육 =3,000천원(15회×200,000원)
 - 친환경운전 홍보비용(방송, 리플렛 제작 등) =5,000천원(10회 ×300,000원)
 - 인건비(직원) : 18,000천원(12개월×1,500,000원)
- 2015년 : 101,000천원, 2016년 101,000천원, 2017년 : 101,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김상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이후 (매년)	계
세입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세출	인건비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교육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시설설치비	75,000	75,000	75,000	75,000	75,000	375,000
	홍보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소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재원 조달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국 비							
시비	소 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일반회계	101,000	101,000	101,000	101,000	101,000	50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